

IMO 제106차 이사회(Council)

I. 일반사항

- 회 의 명 : IMO 제106차 이사회
(106th Session of Council)
- 기간/장소 : '11. 6. 27~7. 1 (5일간)
IMO Headquarters, 영국 런던
- 참 석 자 : 기술연구원장 남석희
해사안전연구센터 조민철 연구원

II. 주요의제 목차

1.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회원국감사제도 이행을 위한 제안(대한민국)
2. APO(IMO 파견근무자) 임용기준 논의
3. 제89차 해사안전위원회 보고검토
4. 외부협력사항
 - 4.1 비정부기구 자문상태 유지를 위한 제안
 - 4.2 IMO 세계최고의 용감한 선원상
5. 사무총장 선거

III. 주요의제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1. 효율적인 회원국감사제도 이행을 위한 제안

가. 의제 도입 배경 및 논의 경과

- 지난 26차 총회에서 많은 회원국 대표단들은 각각 IMO 협약이행에 대해서 회원국 감사제도를 현 자발적인 감사제도에서 제도화된 감사(강제적 감사)제도로 회원국의 역량개발을

제고하기 위해 변경할 것을 검토하였음

- 현재까지 감사제도는 많은 방면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회원국에게 다양하게 적용될 결정사항들은 해사안전과 환경보호를 증진시킬 것임
- 또한 회원국 감사제도는 각 회원국이 기국, 항만국 및 연안국으로써 업무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기구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 따라서 총회는 결의서 A 1018(26)에서 기술하였듯이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의 향후 발전 계획을 결정하였음
- 피감사국을 위해, 특히 저개발국가에 대해, 역량개발, 기술협력 및 지원을 참작하여, 대한민국은 JWGMISA 4/WP.1문서에서 포함되어 있는 감사제도의 골격과 절차의 개정에 있어서 사전질의서 개정, 감사관의 자격과 구성 및 감사절차를 위한 4가지를 제안하였음

나.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피감사국의 협약의 효과적 이행과, 역량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현행 VIMSAS의 감사 절차 및 내용의 개선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피감사국의 IMO 강제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감사의 사전 단계에서 사후조치까지 피감사국의 해사분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을 제안함. 이 제도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 VIMSAS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이를 통해 IMO가 한발 더 회원국의 협약 이행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라고 생각함
- 아국 제출문서를 설명하였으며, 일본, 러시아, 터키 등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사회 회의의 시간 제약으로 자세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차후 2012년 회원국감사 합동작업반 회의(한국 해양수산연수원 이영찬 교수 참석 예정, 2012년 2월~3월)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함
 - 회원국 감사제도가 IMO의 차후 핵심적인 감사 제도가 될 예정이므로 FSI, 회원국감사제도 합동작업반, 해사안전위원회, 이사회를 계속적으로 참석하여 주도권을 가져가야 함

2. APO(IMO 파견근무자) 임용기준 논의

가. 의제 도입 배경 및 논의 경과

- 제105차 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은 아래와 같이 APO의 임용기준을 제안함
- 제105차 이사회는 상기의 제안된 APO 임용 기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함. 단, APO의 선정 및 비용의 지불과 관련하여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APO의 임용기준을 제106차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 사무총장은 제105차에서 제안한 APO 임용 기준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UN의 “Gratis Personnel” 관련 관행을 기초로 한 대안을 제안함. 이는 회원국이 IMO를 통하지 않고 APO 고용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당사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국내법이 APO의 배치를 위한 금액을 선불로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임

- 여성의 APO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대륙적 분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통합기술 협력프로그램(ITCP)을 통한 APO 후보자에 대한 기금 지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임

나. 주요 회의내용 및 결과

- 아국은 사전에 미국, 중국, 일본, 터키, 독일과 동 문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사전 회의(2011년 6월 27일 11시)를 가짐. 동 사전회의에서 사무총장의 건의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사무총장이 제안한 APO 임용기준안은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고려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함
- 본회의장에서는 사무총장의 제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며, 아국은 동 제안이 아국의 예산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사무총장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현재 IMO에는 MOU-based regime과 non MOU-based regime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하나의 통일된 regime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함
- 금번 이사회에서 언급된 각국의 의견들을 고려하여 APO 채용 정책 및 절차에 대하여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3. 제89차 해사안전위원회 결과보고

가. 의제내용

(1) 강제협약 개정안의 채택

- SOLAS 제III장의 개정안을 결의서 MSC.

317(89)로 채택(2013. 1. 1 발효)

-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 코드(IMSBC Code)의 개정안을 결의서 MSC.318(89)로 채택(2013. 1. 1 발효)
- 국제구명설비코드(LSA Code)의 개정안을 결의서 MSC.320(89)로 채택(2013. 1. 1 발효)

(2) 구명정 이탈 및 회수장치의 평가 및 교체

- 동 장치의 평가 및 교체와 관련하여 ‘구명설비의 시험에 대한 수정권고(Res.MSC.81(70))’의 개정안을 결의서 MSC.321(89)로 채택함
- ‘구명정 이탈 및 회수 장치의 평가 및 교체에 대한 지침’을 승인함
- 관련 SOLAS 요건은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 모든 선박에 적용될 예정임. 2014년 7월 1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 동 요건 발효일 이전이라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승인된 지침에 따라 구명정 이탈 및 회수장치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촉구함

(3) 해상보안 강화 조치

- “SOLAS 제XI-2장 및 ISPS 코드에 대한 사용자 지침”을 승인함

(4) 목표기반선박건조기준

- 신개념선박건조기준(GBS) 개발을 위한 일반 지침서(가칭 “GBS 일반지침서”)를 승인함

(5) 장거리 식별 및 추적 장치(LRIT)

- 국제 LRIT 정보 교환기(IDE)의 운영에 대한 결의서 MSC.322(89)를 승인함. IDE 및 서버 재난복구사이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EMSA 및 미국에 의해 운영될 것이며, MSC 90에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임
- 추후 LRIT 관련 사안은 COMSAR에서 논의하기로 함

(6) 전문위원회 보고

DSC

- 제27차 총회(A 27) 승인을 위해, 2011년 「갑판적 목재운반선을 위한 안전실무규칙(2011 TDC Code)의 채택」에 관한 총회 결의서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하였으며,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DSC 16('11. 9)에서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2011 TDC Code안의 수정안을 A 27('11. 11)에 직접 제출토록 함
- 화물운송단위(CTUs)의 포장을 위한 IMO/ILO/UNECE 지침 개정안을 승인하고, 동 지침의 승인을 위해 ILO 및 UNECE(유엔유럽 경제위원회)에게 전달토록 사무국에 요청함
- IMSBC Code 관련 개정안 준비 및 마무리를 위한 E&T Group(편집기술 작업반)을 매 짝수년도 4월 또는 5월 및 전문위원회 회의 직후에 구성하기로 결정함

DE

- A 27('11. 11)의 채택을 위해,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의 검사 시 검사강화제도(ESP)에 관한 Code(2011 ESP Code)」 관련 총회 결의서안을 승인 및 동 코드의 강제화를 위한 SOLAS XI-1/2의 개정안을 승인함
- 자유낙하식 구명정 진수장치의 시험과 관련하여, SOLAS III/20.11.2(구명정 또는 구조정 부하이탈장치 요건)의 개정안을 승인함

SLF

-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협정안」을 외교회의 또는 총회에서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제106차 이사회(C 106, '11. 6-7)에서 다음 3가지 Option 중에서 채택하는데 동의함
- 1. A 27('11. 11)에서 협정을 채택하는 방안

2. MSC 91(12. 11)의 회기 중 또는 MSC 91(12. 11) 전에 3일간의 외교회의를 통해서 협정을 채택하는 방안
 3. South Africa가 외교회의의 주최국이 될 수 있음을 기구에 통보하는 조건으로, 2012년에 South Africa에서의 외교회의를 통해서 협정을 채택하는 방안
-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협정안」의 발효요건 및 동 협정안 내용은 C 106(11. 6-7)의 결정에 따라 외교회의의 또는 총회에서 최종결정에정임

□ STW

- 인적요소 관련 사항은 MSC/MEPC 합동 작업반 대신 STW 전문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함(STW 43차부터)

□ BLG

- MSC 90(12. 5)의 채택을 위한 항해 중 산적 액체화물의 혼합금지에 관한 SOLAS VI의 개정안을 승인함
- 「선내 폐위구역 진입을 위한 개정권고사항의 채택」에 관한 총회 결의서의 section 10.4의 일부를 수정하고 승인함

□ FSI

- MEPC 62(11. 7)의 승인을 조건으로, A 27(11. 11)의 채택을 위해 「항만국통제 개정 절차서안 및 관련 총회 결의서안」을 승인함
- MEPC 62(11. 7)의 승인을 조건으로, A 27(11. 11)의 채택을 위해 「검사 및 증서교부의 조화제도에 따른 검사지침서안」을 승인함
- MEPC 62(11. 7)의 승인을 조건으로, A 27(11. 11)의 채택을 위해 「강제 IMO 협약의 이행을 위한 코드안」 및 「관련 총회 결의서안」을 승인함

□ COMSAR

- A 27(11.11)의 채택을 위해 전세계 기상해양

정보 및 경보서비스에 관한 문서에 관한 총회결의서 초안 승인

(7) 새로운 조치의 이행에 대한 역량 강화

- TC에게 1972 CSC 이행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ITCP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함. 즉, 현재 이용가능한 CTU (Cargo Transport Units)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검토

(8) 공식안전평가

- 아래 논의를 위한 통신작업반의 구성을 승인함
 - FSA 지침서 개정안의 작성
 - FSA 및 HEAP 안내서 개정안의 작성
 - 작업결과 보고서의 MSC 90차 제출

(9) 해적 및 무장강도

- 모든 관련 당사자에 해적으로부터의 보호 조치를 더 잘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BMP 이행에 대한 결의서 채택함
- 해적 및 무장강도 범죄 조사를 돕기 위한 지침을 채택함
- 고위험지역에서의 사설계약무장요원의 이용에 대한 선주, 관리선사, 선장을 위한 잠정지침 및 기국을 위한 잠정권고사항을 승인함. 또한, 무장요원의 승선 여부는 각 기국이 결정할 사항이며, 이러한 요원들에 대한 조건도 기국이 결정할 사항임을 명확히 함

나. 회의결과

- MSC 89차 회의 결과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에 주목함
- 특히,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이행에 관한 협정안 채택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아국은 훈령에 따라 MSC 91차와 연계하여 3일간의 외교회의 개최를 통해 협정을 채택하자는 제2안을 지지함

- 제27차 총회에서 채택안(제1안), MSC 91차와 연계한 외교회의에서의 채택안(제2안)에 대한 지지들도 있었으나, 많은 국가들이 2012년 남아공(케이프타운) 외교회의에서의 채택안(제3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이사회는 제3안으로 결정함
- 향후조치사항 : 남아공 외교회의 개최일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동 외교회의에서의 참가 준비 등을 위해 개최시기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 * 남아공은 회의장에서 '12. 10월 개최를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IMO 사무국과 협의 후 최종 결정기로 함

4. 외부협력 사항

4.1 비정부기구 자문상태 유지를 위한 제안

가. 의제개요 및 내용

- 비정부기구의 자문상태를 지속을 위한 회의 참석 횟수와 관련 문서 제출을 고려하여 문구 개정을 제안하는 문서임
- 제105차 이사회는 비정부기구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의 구두 발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공지하였다. 특히, 이사회는
 - 비정부기구 자문상태 인정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였으며,
 - 자문상태 인정 지침서를 어떻게 규정 개정할 것인지 차기 회의(106차 이사회)에서 의논하기로 결정하였다. 싱가포르 해협 기술협력 기금과 관련하여, 독일과 유럽연합(EC)의 기부금 제공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음
- 비정부기구의 자문상태 유지를 위한 IMO 기준 및 절차
 - 비정부 국제기구의 관계에 관한 규정 10은

그 기구의 자문상태의 지속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비정부기구의 자문상태를 인정할 것인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주기는 2년임

- 비정부기구의 자문상태 인정에 관한 지침서 6절에서는 지난 2년동안 IMO업무에 중요한 공헌을 하지 않으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자격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함

1. IMO가 주최한 회의에 대한 회의 참석
2. 문서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IMO 업무에 참여
3. IMO가 지원하는 회의에 각 기구의 대표가 있을 것

○ 관찰사항

- 대한민국은 사무국이 제출한 비정부기구의 활동현황에서 각 기구가 문서와 참석현황을 소개한 문서에 따라, 2009년과 2010년 2년 동안 각 비정부기구의 회의 참석 회수 및 문서제출건수를 검토함
- 비정부기구의 활동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까지 자문상태를 취득한 69개 기관 중에서 최근 2년간 2009년~2010년 회의를 참석하지 않은 NGO는 2개 기관이었으며, 어떠한 문서도 제출하지 않은 비정부간기구는 13개 기관이었다. 또한 지난 2년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2개 기관은 어떠한 문서도 제출하지 않음
- 대한민국은 상기와 같이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한 회의 참석 및 의제문서 제출에 협력하지 않고 있는 NGO들이 있는 반면,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IMO의 목적달성을 위해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다수의 NGO들과 동일한 자문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함

- 자문상태 취득시 적용 받는 지침서에 따르면 NGO들은 IMO 업무에 도움을 주어야 하나, 회의 참석과 문서제출을 하지 않는 NGO의 활동은 회원국에게 약속한 협력사항 및 활동 계획과는 어긋나는 결과로 효율적 회의 진행 및 IMO 목적달성을 위해 반드시 명시된 기준을 통해 자문상태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 따라서, 대한민국은 비정부기구 자문상태 인정 지침서 6절의 명확한 통일해석 및 적용을 위해서 회의 참석 및 문서제출에 대한 최소 요건을 규정하여 상기와 같이 지난 2년간의 객관적인 활동 증거가 식별되지 않는 NGO들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대한민국은 비정부기구의 자문상태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부속서에 기재함

- IMO가 주관하는 회의에 최근 2년동안 최소 1회 이상 참석 요구, 또는

- IMO가 주관한 회의에 최근 2년동안 최소 1회 이상의 문서 제출 건 수

- 자격이 상실된 비정부기구가 차후 그 자격을 인정받길 다시 희망할 경우에는 그 인정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음

나. 회의결과

○ IMO 제106차 이사회에서는 아국이 제출한 문서를 기반으로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The Group of Council Members) 아래와 같이 논의 하였음

- 참여국가 : 대한민국 포함한 11개 회원국

- 회의 의장 : Mr. Brad Groves(호주)

- 논의 기간 : 2011년 6월 29일~30일

- 논의 주제 :

1) IMO의 비정부기구 자격기준 지침서 개정

2) 7개 NGOs 자격 신청기관 심의 및 결정

○ 논의 결과

- IMO의 비정부기구 자격기준 지침서 개정 관련하여 모든 회원국은 아국이 제출한 문서에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 NGOs 자격 인정 기준 중 “지대한 공헌”(Substantial Contribution)이란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사회 제108차(2012년 6월)에서 공식 작업반을 설립하여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논의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1. “Truly International”, 한 국가 또는 한 대륙만 되지 않아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도입

2. “또 다른 기관을 통하여 IMO로 의견/자문 표명”에서 “access”의 의미 해석

3. “지대한 공헌”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 (예, 회의 참석 수(2년에 2회) 및 문서제출)

4. 기존 NGOs를 전문분야 또는 활동사항을 참작하여, 사무국이 Grouping하여 관련 문서를 제출할 것임

4. 외부협력 사항

4.2 IMO 세계최고의 용감한 선원상

가. 의제개요

○ 38개군 후보자(그룹) 중에서 대한민국은 삼호 주얼리호 석해균 선장, 세진 상운 YM Great 권혁철 선장, 한국해양경찰 태평양 제9호 승무원을 추천함

나. 회의내용 및 결과

○ 대한민국 삼호 주얼리 석해균 선장이 그 간의

- 공로를 인정받아 석해균 선장이 ‘용감한 선원상(IMO Award for Exceptional Bravery at sea)’ 수상자로 선정되었음
- 이번 제106차 이사회에서 “용감한 선원상” 선정심사 시, IMO 회원국 등으로부터 추천된 38개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국제해운연맹(ISF) 등 NGO로 구성된 1차 평가위원회 및 IMO 위원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2차 선정위원회에서 석해균 선장을 올해 세계제일의 용감한 선원상 수상자로 결정하였음
 - 석해균 선장은 지난 2011년 1월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당시 보여준 목숨을 건 용기와 결단력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게 됐다. 석해균 선장은 오는 11월 런던 IMO본부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 초대해 메달과 상장을 전달할 예정임
 - ‘용감한 선원상(IMO Award for Exceptional Bravery at sea)’ 은 유엔 산하기구인 IMO가 2007년 제정한 것으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해양인에게 수여하고 있음
 - 아울러, 지난해 12월 목포 앞바다에서 전복된 카훼리선박으로부터 15명의 여객을 구조한 해양경찰청 소속 태평양 9함도 그 공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표창장 수상자로 선정됨
- 기호3번 : Neil Frank Ferrer(필리핀)
 - 기호4번 : Lantz(미국)
 - 기호5번 : Esteban Pacha Vicente(스페인)
 - 기호6번 : Koil Sekimizu(일본)
- 임명절차
 - IMO 협약 22조에 의거하여 IMO 사무총장 직위 임명 절차를 제공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이사회는 총회의 승인과 같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것이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 임명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또한 사무총장의 임기와 그 업무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 선거절차
 - 이사회는 업무절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을 개정함
 - 규정 30
 - “이사회와 그 하부 조직에서는 선거가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해 채택된 결의서와 권고안을 결정할 수 있다.”
 - 규정 31
 - “각 회원국은 1표를 가질 수 있으며 IMO 협약 제62조에 의거하여 회원국이 참석하고 선거한다는 의미는 회원국이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표를 던지는 것을 말한다.”
 - 규정 35
 - “모든 선거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 규정 36
 - “표 검사자는 의장에 제안에 의거하여 임명되고 각 국가가 진행한 선거를 검사할 수 있다.
 - 규정 37
 - “한 후보자가 당선되어야 하나 어떤 후보자도 과반수를 갖지 못할 경우, 두 번째

5. 사무총장 선거

가. 의제개요 및 내용

- 6개의 회원국에서 사무총장 지원자로 입후보함
 - 기호1번 : 채이식(대한민국)
 - 기호2번 : Andreas Chrysostomou(사이프러스)

투표가 가장 많은 표를 가진 두 후보자에게 실시되어질 것임. 만약 두 번째 투표에서 똑같이 나뉘어 진다면 이사회 의장이 이 회기에서 추첨에 의해서 사무총장을 정한다.”

· 규정 37bis

“4명 이상의 후보자가 진출할 경우에는, 만약 규정 37에 따라서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 투표에서 어떠한 후보자도 과반수 표를 가지지 못할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때 까지 투표가 시행할 것이며, 또한 이 전 투표에서 최하위 표를 가진 후보자는 탈락될 것이다.”

· 규정 37ter

“두명 이상의 후보자가 최하위 표를 가질

경우에는 그 후보자들간에 투표를 시행하여 그 중 최하위 표를 가진 후보자가 다음 투표에 진출할 수 없다.”

나. 회의결과

- 회의기간(11. 6. 28)중 비밀투표로 실시하였으며, 일본 후보 코지 세키미주(현 사무국 해사 안전국장)가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
 - 당초 강세가 예상되었던 미국후보의 부진과 치밀한 선거 활동으로 대량 득표(1차 19표 / 2차 23표, 2차 투표에서 과반수 확보)
 - 아국후보는 대표단의 활발한 현장 지지활동에도 불구하고 약세인 판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낙선했